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9월 16일
의회 운영 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9월 6일, 정순기 의원 외 5명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2년 9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순기 의원)

- 가. 개정이유
 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“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사항”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
(안 제3조제2항제2호 → 안 제3조제2항제3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- 나. 검토의견
 -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금

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“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”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

(안 제3조제2항제2호 → 안 제3조제2항제3호)

○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,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규정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